##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48 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 박범계 · 임오경 · 전용기

이강일 • 백승아 • 채현일

장종태 • 조인철 • 김영화

이기헌 • 이개호 • 김태선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고,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러한 수훈 자격 기준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만을 수여 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국훈장에 대해서는 군인·군무원에게 그 수여 기회를 주로 부여하는 반면, 경찰·소방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 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희 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·소방공무원들도 군인·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, 경찰·소방공무 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 및 제15조). 법률 제 호

##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"군인·군무원"을 "군인·군무원 및 경찰공무원·소방공무원"으로 한다.

제15조 중 "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"를 "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근정훈장) 근정훈장은 공	제14조(근정훈장)
무원( <u>군인·군무원</u> 은 제외한다.	<u>군인·군무원 및 경찰공무</u>
이하 같다), 사립학교 교원	<u>원·소방공무원</u>
(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3항	
에 따라 국·공립학교의 교원	
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	
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	
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	
「별정우체국법」 제2조에 따	
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	
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	
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, 이	
를 5등급으로 한다.	
제15조(보국훈장) 보국훈장은 <u>국</u>	제15조(보국훈장) <u>국</u>
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	<u> 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</u>
<u>운 사람에게</u> 수여하며, 이를 5	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
등급으로 한다.	람에게